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등	3
※ 참고자료	15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개요(안)	15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6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2025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한편, ESG 경영·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정의를 신설하고, 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및 안 제15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u>
<u><신설></u>	<u>제15조의2(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u>

현행	개정안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u> <u>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u>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u>

현행	개정안
	<u>한다.</u> <u>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필요</u>

현행	개정안
<u><신 설></u>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u> <u>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2.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u> <u>3. 제6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u> <u>4. 제15조의4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부금품 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u>

현행	개정안
<신 설>	5.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실적이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비용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현행	개정안
	①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촉진

현행	개정안
	<u>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①식량·목재 등 공급서비스, ②대기정화, 탄소흡수 등 환경조절서비스, ③생태관광, 휴양 등 문화서비스, ④토양형성, 서식지제공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등으로,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현행법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기후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최근 자연환경정책의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에서 인구감소 등 지역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담으로

음과 같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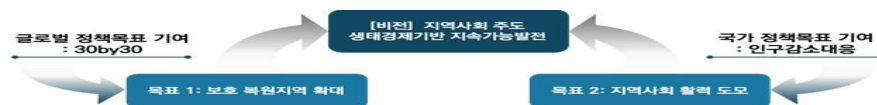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³⁾

보호지역이 실질적인 생태 보전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역 기반 생태관광,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 지역주민이 보호지역 보호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성⁴⁾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수 생태계 보전·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개요(안)]⁶⁾

○ 비전 및 목표



○ 추진절차 : 공모·선정→사업계획 수립→촉진구역 지정→성과 평가→국가생태 경제도시 지정→도시차원 지원 확대

○ 사업 구성

- (중점사업) 경관숲 조성, 생태복원 체험관(폐교활용), 생태힐링센터 등 생태계 보전·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환경부 연계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계복원사업 등 환경부 자연생태 프로그램 중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패키지 지원
- (기타) 관계부처 협력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 참여사업 등

자료: 기후부

3) “생물다양성 위한 보호지역 확대? 범부터 개선해야”, (GREENPEACE, 2025.04.03.)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33627/biodiversity2503/>)

4)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열려”(녹색연합 보도자료, 2025.03.12.)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ecosystem-conservation/baekdudaegan-preservation/110887/?utm_source=chatgpt.com)

5) <참고자료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개요(안)>

6) 참고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서 30년까지 20개소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계획을 명시한 바 있음.

<참고자료2.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중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필요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포함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의3제3항7)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주체⁸⁾와 안 제15조의4에 따라 기탁을 받는 대상⁹⁾ 및 유사 입법례¹⁰⁾를 참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제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의한 위탁형식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보완도 필요해 보임.

7) 안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③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8) 안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9) 안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①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10)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안 제15조의4¹¹⁾에 따른 기탁의 대상은 구역지정의 목적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 11) 안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①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참고자료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개요(안)

□ 추진배경

- 그간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 노정
 - 이로 인해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생태계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관광 및 휴양, 생태복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우수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정책모델 필요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년)』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계획 명시(30년까지 20개소)

□ 사업 개요

○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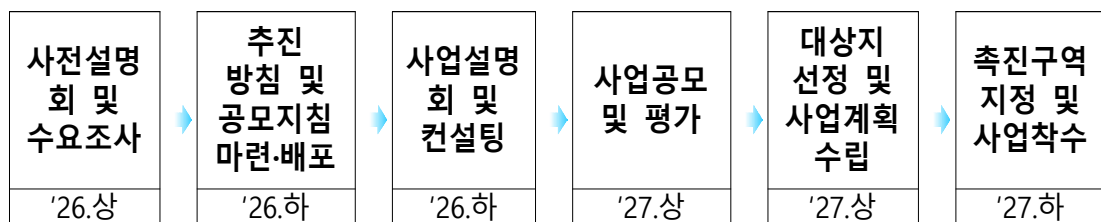
※ CBD COP15(‘22.12) : GBF 채택(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으로 ‘30년까지 보호지역과 OECM(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을 (현)17.8% → 30% 목표 달성 필요

○ 사업기간 : ‘27~계속

○ 추진절차 : 공모·선정→사업계획 수립→촉진구역 지정→성과 평가→국가생태경제도시 지정→도시차원 지원 확대

- **지원예산** : 1개 구역당 4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중점사업)
- **지원대상** : 보호지역 15%이상 + 재정자립도 20%이하 시·군·구
대상 매년 4곳 공모·선발
- **사업주체 및 형태** : 직접수행(지원기구 대행), 지자체 보조 70%
- **사업 구성**
 - (중점사업) 경관숲 조성, 생태복원 체험관(폐교활용), 생태힐링센터 등 생태계 보전·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환경부 연계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계복원사업 등 환경부 자연생태 프로그램 중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패키지 지원
 - (기타) 관계부처 협력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 참여사업 등

○ 주요 일정



□ 기대 효과

- (글로벌 협약 이행)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보호·복원지역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GBF 목표 달성 및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탐방객, 휴양·치유 인프라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소비 촉진 등
- (생태계서비스 만족도 개선) 지역주민의 생태계서비스 제공수준을 높임으로써 거주공간의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법례]

- 생태거점(마을)
- 연계사업
- 기존 지역 자원
- 생태탐방로
- 생태탐방로 주요 지점

[생태게서비스 확대형]

- 1 자연환경 보전형
- 2 생태관광형

[생태계 활용 증진형]

- 1 생태체험형
- 2 생태경제형
- 3 생태문화형
- 4 서비스전환형

생태탐방루트 (*1-2 코스 연계)

- 1 에코 VISITOR 센터 - 백두대간 자연공존지역 - 자작나무숲 - 에코힐링센터 - 도시재생사업지 내 숙박
- 2 **만 자연공존지역 - 생태예술체험 및 전시관 - 생태습지 - 폐교활용 환경교육 및 생태복원 체험장 - 에코위케이션센터 - 어촌체험 - 화석산지 - 유류지 활용 생태캠핑장(갯벌체험)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절차(안)

사업단계	주요절차	주요내용
기획 단계	사업설명	- 사업 공모가이드라인 배포 (환경부) - 사업설명회 (환경부)
	공모 컨설팅	사업안내 및 컨설팅 (지원기구)
공모 단계	기본구상	- 지역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발주 (지자체) - 사업 기본구상 및 공모제안서 작성 (지자체)
	공모	- 사업접수 및 공모제안서 제출 (지자체→환경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환경부)
	공모 선정	위원회 평가 (환경부)
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예산 지원 (환경부) - 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
	검토 및 지정	- 위원회 검토 및 확정 (환경부) - 촉진구역 지정 및 고시 (환경부)
	실시설계서 작성	- 사업비 지원 (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행 (지자체) - 적정성 및 기술 검토
	설계 검토	설계완료 사업(관련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을 대상으로 설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위원회 자문
시행 및 모니터링 단계	사업 착공	공사 발주 (지자체)
	사업 시행	사업경과보고 및 현장점검 (환경부, 지원기구)
	준공	- 준공검사 (지자체) - 실적보고 (지자체→환경부, 지원기구)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지자체) -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환경부, 지원기구)
	사후 평가	결과보고(지자체) 및 평가 (환경부)
사업 확대	성과 평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준공 후 3~5년 이후) (위원회)
	국가 생태경제 도시 지정 등	- 성과 평가 결과 확인 (환경부) - 도시(시군구)차원 확대 지원 (환경부)

※자료 : 기후부

2.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년)』 (2020년 수립)

p. 44

제3편 계획의 비전과 전략

제2장 국토환경 기본구상

1. 수립방향과 기본원칙

국토환경관리 기본원칙

-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을 통해 지역생태계의 가치 향상 및 사회경제적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 구역’으로 설정

-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 활성화

p. 49~50

제4편 핵심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주요 지표	구분	단위	현재	⇒	2030	⇒	2040
	국토우수생태계지역	%	24.8(‘18)	⇒	27	⇒	33
	생태훼손지역 보전·복원	ha	465(‘17)	⇒	1,200	⇒	2,000
	국가생물종 목록화 수	천종	50.8(‘18)	⇒	68	⇒	75
	<u>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u>	건	-	⇒	20	⇒	50
	국가 연안·해양건강성 지수(OHI)	100점	77(‘18)	⇒	80	⇒	85

p. 60

3. 주요 정책과제

2) 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 국토생태벨트지역 등의 생태경제지역 형성 촉진과 지원 확대

-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중심으로 생태관광 및 휴양, 치유인프라, 생태산업 등을 토대로 자연과 공생하면서 활력을 제고하는 ‘생태경제지역’ 및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 공급서비스(식량생산, 물공급 등), 조절서비스(공기정화, 수질조절 등), 문화서비스(교육, 문화, 관광 등), 지지 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토양형성 등)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발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구역 지정. 국가생태축, 광역생태축 등과 연계하여 생태계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 지자체는 자발적 창의성을 토대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p, 134

2. 부문별 공간환경 전략

〈표 5-1〉 환경부문별 분류에 따른 공간환경전략 수립

부문	세부항목	공간영역	
		현황도	전략도
생태환경 증진전략	자연생태 /물환경/연안	법제적 보전지역,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주요 생물 서식지역, 주요 도로 및 철도, 하천	권역내 국토생태축(생태축/수계축) 핵심보전지역(육상/해상), 보전적 관리지역(육상/해상), 단절구간 생태복원지역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Zone)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전략	대기/미세먼지	오염배출시설 분포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대기오염배출원 관리지역
	수질/수자원	오염배출원 분포지역, 하천(국가/지방1급)	수질오염배출원 관리지역, 수질오염 목표치 미달성 지역
	폐기물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 저감요구지역,
	악취, 소음/진동	악취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및 대책지역	악취, 소음/진동, 관리지역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전략	유해오염물질	유해오염물질 배출시설	유해오염물질 배출 우려지(고밀도)역
	인구구조	한계취락	한계취락 밀집지역
	기후변화	기후변화 취약지역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
	재난재해	재난 취약지역	재난재해 관리지역 (도시확장 예측지+재난 취약지, 기존시가지+재난취약지)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Zone)

□ 『제5차 생물다양성전략(‘24~’28년)』 (2023년 수립)

p. 44

V. 추진과제

2-3 녹색복원 新제산업 생태계 조성

② 전문 녹색복원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생태복원(생태계서비스 향상, 그린 인프라 확충 등)이 지역의 경제
제적 가치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 '25년 시범사업 1개소(금강·충청권 : 서천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 후 5개 권역
(한강·수도권, 태백·강원권, 낙동강·영남권, 영산강·호남권, 제주권)으로 단계적 확대

p. 64

10-1 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및 증진

② 지자체의 생태계서비스 고려 촉진

-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확대(20개소, ~'30)

* 생태우수지역 또는 생태복원으로 지역생태계 가치 향상 및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
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 및 휴양·치유 인프라 지원 연계